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4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Ⅰ. 제안이유

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 및 관련법 조항을 우리군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정비 및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Ⅱ. 주요내용

1. 적용의 완화 신설(안 제3조제3항)
 ○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⇒ 단독주택 및 농·어업용 창고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함.
2.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신설(안 제4조제6호)
 ○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법령의 제정·개정에 따라 부적합하더라도 허가가능 건축물 ⇒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
3.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신설(안 제15조의2)
 ○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
 ○ 위원회 구성 : 성주군 건축위원회 제1분과위원으로 구성
 ○ 임무 (법 제4조의4 제1항)
 -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
 -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
 → 복합민원에 따른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외 20개 항목
 ○ 사무국설치 : 도시건축과
 ○ 사무국장 : 건축관리담당
4. 가설 건축물설치기준 완화(안 제21조)
 ○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변경
 2층 ⇒ 3층(안 제21조제1항제3호)
 ○ 공장부지 안에서 경량철골구조(판넬 등의 조립식구조를 포함한다)
 ⇒ 경량철골구조(부재 규격 100밀리미터이하)(안 제21조제2항제7호)

5. 건축물의 사용승인생략 건축물 신설(안 제21조의3)

○ 산업단지내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사의 검사조서로 갈음

6. 건축지도원 개정(안 제24조제1항제3호)

○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자 ⇒ 삭제

7.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신설(안 제25조의2)

○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,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

○ 수시 및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(안 제25조의2 제1항)

⇒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8.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개정(안 제35조)

○ 저장시설: 건조시설, 석유저장시설(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제외한다.), 석탄저장시설, 시멘트저장용 싸이로, 기타 이와 유사한 것.

⇒ 저장시설: 건조시설, 석유저장시설(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제외한다.), 석탄저장시설, 시멘트저장용 사일로, 기타 이와 유사한 것. (단, 농·어업용 및 축산관련시설은 제외한다.) (안 제35조제1항제2호)

○ 유희시설 :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로서 영 제3조의4에 의한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.

⇒ 유희시설 : 「관광진흥법」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로서 영 제3조의4에 의한 【별표1】의 건축물이 아닌 것. (단, 간이·임시 및 이동식형태의 시설은 제외 한다.) (안 제35조제1항제3호)

Ⅲ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 (붙임 1 참조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2014. 10. 20. ~ 2014. 11. 09.)

(2) 규제심사 : 의견 없음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1건(안 제15조 2항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) 의견반영

○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주군 건축조례 제6조(구성)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킬 것을 요청함에 검토의견 반영.

Ⅳ. 자치법규 내용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성주군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성주군 건축조례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영제6조제1항 7의2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및 농·어업용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.

제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

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건축민원전문위원회) ① 법 제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성주군건축민원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4 제1항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의 구성은 성주군건축위원회 제1분과위원으로 한다.

③ 운영과 관련하여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 및 제9조부터 제13조 규정을 준용하며 사무국은 성주군도시건축과로하며 사무국장은 건축관리담당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3호 중 “2층”을 “3층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“경량철골구조(판넬 등의 조립식구조를 포함한다.)”를 “경량철골구조(부재 규격 100밀리미터 이하)”로 한다.

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3(건축물의 사용승인)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단지내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물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25조의2의 제목 “(수시점검 실시)”를 “(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5조의2를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영 제23조의2제1항3호 규정에 따라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

제35조제1항제2호 중 “싸이로”를 “사일로”로, “유사한 것”을 “유사한 것 (단, 농·어업용 및 축산관련시설은 제외 한다.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아닌 것”을 “아닌 것 (단, 간이·임시 및 이동식 형태의 시설은 제외 한다.)”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의 완화) ①・② (생 략)	제3조(적용의 완화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영제6조제1항 7의2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및 농・어업용 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.
제4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 법 제6조,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・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(용도변경을 포함한다) 할 수 있다.	제4조(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) 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
<신 설>	제15조의2(건축민원전문위원회) ① 법 제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성주군건축민원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4 제1항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의 구성은 성주군건축위원회 제1분과위원으로 한다. ③ 운영과 관련하여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 및 제9조부터 제13조 규정을 준용하며 사무국은 성주군도시건축과로하며 사무국장은 건축관리담당으로 한다.

제21조(가설건축물)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	제21조(가설건축물) ①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2층 이하일 것	3. 3층 -------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	② ---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공장부지 안에서 경량철골구조(판넬 등의 조립식구조를 포함한다.)로 된 창고, 간이작업장, 기계보호시설,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임시용 건축물	7. ---------- 경량철골구조(부재 규격 100밀리미터 이하)----------
<신 설>	제21조의3(건축물의 사용승인)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단지내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물로 한다.
제24조(건축지도원) ① 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.	제24조(건축지도원) ①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	<삭 제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5조의2(수시점검 실시)	제25조의2(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)

<신 설>	① 영 제23조의2제1항3호 규정에 따라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
(생 략)	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35조(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)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제35조(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) ① ----------. -------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저장시설 : 건조시설, 석유저장시설(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제외한다.), 석탄저장시설, 시멘트저장용 싸이로, 기타 이와 유사한 것	2. ---------- 사일로---------- 유사한 것 (단, 농・어업용 및 축산관련시설은 제외 한다.)
3. 유희시설 :「관광진흥법」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제3조의4에 의한 [별표 1]의 건축물이 아닌 것	3. ---------- 아닌 것 (단, 간이・임시 및 이동식 형태의 시설은 제외 한다.)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